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6일, 진중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사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9.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종오 의원)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0~80년대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개관하여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스포츠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포츠사에 가치있는 유물의 소실과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보존·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체육진흥기금을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안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u>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u>

	<u>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u>
11.·12. (생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국립스포츠박물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지원(보조율 100%)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3년부터 건립 중인 국립박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스포츠박물관을 2025년 말 준공하고 전시물 제작·설치,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6년 9월 개관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개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임.
- 국립박물관은 통상 ① 개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운영하거나, ② 관련법상 박물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또는 ③ 관련법상 설치·운영기관의 업무에 자료 수집·연구·전시 등을 명시하는 형태로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런데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경우 2023년 건축 착공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박물관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개정안은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및 스포츠 유물 수집·보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